

모바일브랜드(MobileBrand) 예약어 처리 지침

제정 2003. 12. 02

개정 2004. 08. 23

전문개정 2005. 07. 08

1. 배경 및 목적

- 모바일브랜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, 입법기관, 행정구역명 등은 예약어로 분류하여 등록을 제한하고 있음

※ 관련근거 : 모바일브랜드(MobileBrand)서비스 시행 지침

- “서비스 시행에 따른 공공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명칭은 예약어로 지정하여 등록을 제한함”

- 최근 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(M-gov) 구현 정책의 일환으로 무선인터넷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
 - 제주시청으로부터 예약어로 분류되어 있는 “제주시”, “제주시청”에 대한 등록요청 접수(2003. 11. 19)

※ 제주시청에서 추가로 요청한 브랜드명 “제주”는 서비스 이용 혼란 방지 및 향후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유보어로 등록이 되어있어 이에 대한 처리는 추후 검토 예정

※ 유보어 : 한글도메인 유보어 정책 준용(www.rfc-kr.or.kr RFC-KR-144 참조)

- 공공기관명칭 등을 포함한 예약어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

2. 예약어 정책 및 현황

o 예약어 정책

구분	주요내용
예약어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o 공공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명칭 등은 등록을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기관(행정관청/의결/집행/감사/지방자치단체) - 입법기관(국회/지방자치의회) - 정부산하기관(정부투자기관/연구 및 비연구 출연기관) - 외국공관(대사관/영사관/국제기구) - 행정구역명, 사법기관, 국가명, 교육기관 등
적용방법	한글도메인의 예약어 정책 준용

3. 처리 지침

o 개요

- 예약어 등록 요청 기관은 해당 등록대행자에게 예약어 등록 요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증절차를 통해 등록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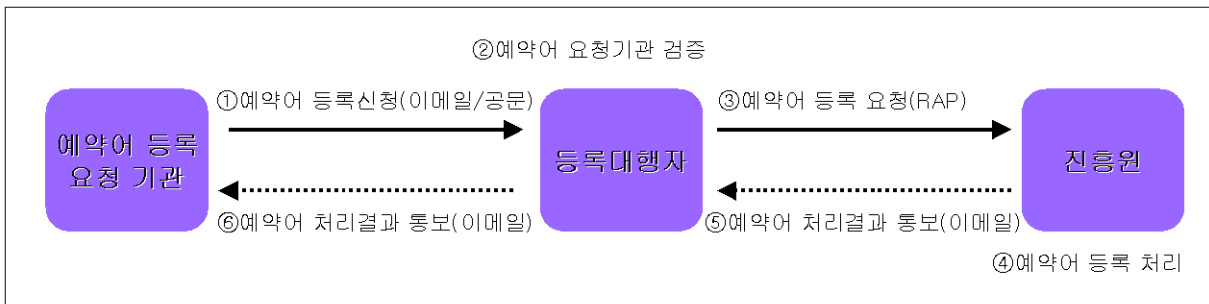
o 처리 절차

- 예약어 등록 요청한 기관의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접수받아 검증 실시

※ 첨부문서 : 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등 기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※ 추가 기재 사항 : 기관명, WINC번호, 등록요청 모바일브랜드, 담당자 연락처

- 기본 절차



4. 기타 사항

o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모바일브랜드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

※ 현재 예약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명칭은 선접수/선등록에 의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한 상황임

- 공공기관명칭을 공식 요청한 기관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정당성이 입증될 경우 해당 기관에 등록 조치 예정

※ 관련근거 : '모바일브랜드(MobileBrand)서비스 시행 지침'의 예약어 정책
 - 등록 후에도 해당기관에서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, 이용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등록자에게 변경요청 통보 및 조치

- 해당 공공기관명칭은 모바일브랜드 예약어 리스트에 추가 등록

